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은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40

발의연월일: 2021. 6. 3.

발 의 자:이은주·장혜영·강은미

서영교・심상정・류호정

이상헌 · 김형동 · 이채익

남인순 · 정성호 · 배진교

김의겸 · 강선우 · 아수진비

최혜영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사후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아동학대 신고접수 횟수와 상관없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아동학 대 신고가 접수된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주기적인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며,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, 응급보호,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,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 등을 고려하여 설치·운영하며, 국가는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6항제1호, 제22조제3항제1호의2 및 제8항 신설, 제52조제1항제12호 신설, 제53조의2, 제59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6항제1호 중 "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"를 "아동학대"로 한다.

제22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의2.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기적인 양육환경 조사
- ⑧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업무수행이 불가피하고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제52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

제53조의2의 제목 "(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)"을 "(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·운영)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52조제1 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"를 "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아동의 연령과 장애 등을 고려하여"로, "지정할"을 "설치·운영할"로

하며, 제5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직원의 자격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아동학대 관련 업무수행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6항제1호 및 제22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신고 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보호조치) ① ~ ⑤ (생	제15조(보호조치) ① ~ ⑤ (현행
략)	과 같음)
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	6
수・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	
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	
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	
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	
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	
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	
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	
나,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	
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	
위탁하여 보호(이하 "일시보호	
조치"라 한다)하게 할 수 있다.	<u>.</u>
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	
상아동에 대한 상담, 건강검진,	
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	
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	
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.	
1. <u>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</u>	1. <u>아동학대</u>
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	
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	

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 는 경우

- 2. ~ 4. (생략)
- ⑦ ~ ① (생 략)
- 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저의무) ①·② (생 략)
 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 수·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- 1. (생략)

<신 설>

2.·3. (생 략) ④ ~ ⑦ (생 략) <신 설>

	2. ~ 4. (현행과 같음)
	⑦ ~ ① (현행과 같음)
제	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
	의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	③
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
- 1. (현행과 같음)
- 1의2.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른 주기적인 양육환경 조사
- 2. 3. (현행과 같음)
- ④ ~ ⑦ (현행과 같음)
- 8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3 항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 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업무수행이 불가 피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

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 ① 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~ 11. (생 략) <신 설>

②·③ (생 략)

지정)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 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. 치료.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 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59조(비용 보조) (생 략)

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- 1. ~ 11. (현행과 같음)
- 12.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 아동쉮터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53조의2(학대피해아동쉼터의 | 제53조의2(학대피해아동쉼터 설 치・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 애 등을 고려하여-----

-----설치 · 운영할-----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 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· 운영 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 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59조(비용 보조) ① (현행 제목

	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바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
	방지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
	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
	<u>수 있다.</u>